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0-132 관련
----------	--------------

발의년월일: 2020. 10.

발 의 자: 강명숙 외 1명

1. 수정이유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위원의 수를 총 120명 이내로 하고,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의 구분을 없애는 대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3조제1항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위원은 120명 이내의 구성 하도록 규정함.
- 나. 안 제3조제4항에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현행대로 유지함.
- 라. 부칙 안 제2조에 전문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 마. 지역원로회의 및 전문가회의 구분을 없앤 자문단 통합에 따라 자구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각 회의”를 “자문단”으로, “각각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각 회의의 위원”을 “자문단”으로, “많고”를 “많고,”로 한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각 회의의 부위원장”을 “부위원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전단 중 “각 회의는 자문단”을 “자문단”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회의는”을 “자문단은”으로, “각 회의의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을 “자문단의”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중 “각”을 “자문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의견청취 등)”을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서울특별

시 마포구 미래성장자문단의 전문가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u>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 및 전문가의 건의·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서울특별시</u> ----- ----- ----- ----- -----.</p>
<p>제3조(구성) ① <u>자문단은 정책 분야별로 지역원로회의와 전문가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로 각각 구분하여 구성 및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u></p> <p>② <u>각 회의는 분야별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③ <u>각 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u></p>	<p>제3조(구성) ① <u>자문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삭 제></u></p> <p>② <u>자문단</u>----- - <u>위원</u> -----.</p>

다.

<신 설>

④ 각 회의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자치행정, 복지, 경제, 관광,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각 그 회의를 대표하며, 소관 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체회의의 위원장은 각 회의의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회의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각 회의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④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자문단-----
----- 많고, -----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부위원장-----

-----.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구청장의 요청 또는 각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각 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 . -----

-----.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은 ----- 재
----- 적위원 -----

- 임시회의-----.

③ 자문단의 -----

-----.

제9조(회의록) 자문단 -----

-----.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있다.

②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워크숍·토론회·세미나·포럼·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자문단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